

## 조문별 개정 이유서

□ 모터달린보드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(안 [별표2], [별표5], [별표6])

### 가. 개정 이유

-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개정 내용

-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조정(안 [별표2], [별표5], [별표6] 개정)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합리적인 안전관리제도 운영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